

법 무 사 보 수 표

※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(산정방법)을 정한 것입니다. 다만,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「법무사보수기준」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| I.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| | | | | |
|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. 부동산등기(토지, 건물·구분건물, 임목, 선박,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)의 소유권보존(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)·이전, 용익권·담보권의 설정,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※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. | | | | | |
| 과세표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 | 5천만원까지 | 210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1억원까지 | 21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10/10,000 |
| 1억원초과 | 3억원까지 | 260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9/10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440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8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600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7/10,000 |
| 10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950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20억원초과 | 200억원까지 | 1,450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200억원초과 | | 8,650,000원 | + | 20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| | | | + | | |
| 2.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| | | | | |
| 과세표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 | 5천만원까지 | 105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2억원까지 | 105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2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180,000원 | + | 2억원초과액의 | 2/10,000 |
| 10억원초과 | 100억원까지 | 340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| 100억원초과 | | 1,240,000원 | + | 100억원초과액의 | 1/20,000 |
| 3. 그 밖의 등기 | | | | | |
| 그 밖의 등기의 유형 | | | 기본보수 | | |
| (1) 재단의 분할·합병·목록변경 | | | 80,000원 | | |
| (2) 권리의 변경·경정 또는 회복 | | | 120,000원 | | |
| (3)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·경정 | | | 40,000원 | | |
| (4) 말소등기 | | | 80,000원 | | |
| 4. 신탁등기 | | | | | |
| 신탁등기의 유형 | | | 기본보수 | | |
| (1) 신탁등기, 신탁가등기, 재신탁등기, 담보권신탁등기,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,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 등기,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| | | 150,000원 | | |
| (2)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,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, 신탁의 합병·분할에 따른 등기 | | | 80,000원 | | |
| (3)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| | | 220,000원 | | |
| (4)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| | | 50,000원 | | |
| (5)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| | | 70,000원 | | |
| II. 상업·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| | | | | |
| 1. 회사(합자조합 포함, 이하 같다) 또는 법인의 설립(분할, 합병,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)에 관한 등기 | | | | | |

| 납입(출자)금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5천만원까지 | 420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1억원까지 | 42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22/10,000 |
| 1억원초과 | 3억원까지 | 530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9/10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710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8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870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7/10,000 |
| 10억초과 | 20억원까지 | 1,220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6/10,000 |
| 20억원초과 | 200억원까지 | 1,820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200억원초과 | | 9,020,000원 | + | 20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2. 회사의 자본(자산)의 증감(흡수합병·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)에 관한 등기

| 납입(출자)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(자산)의 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5천만원까지 | 300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1억원까지 | 30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19/10,000 |
| 1억원초과 | 3억원까지 | 395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8/10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555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7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695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6/10,000 |
| 10억초과 | 20억원까지 | 995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20억원초과 | 200억원까지 | 1,495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200억원초과 | | 8,695,000원 | + | 20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3.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·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

| 사채총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| 1억원까지 | 160,000원 | | | |
| 1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160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5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360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3/10,000 |
| 20억원초과 | 100억원까지 | 810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2/10,000 |
| 100억원초과 | | 2,410,000원 | + | 10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4. 상업·법인의 기타 등기

| 상업·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
|--|------------|
| (1) 외국회사(법인)의 영업소(분사무소) 설치·변경·폐지 | 280,000원 |
| (2) 자본증가 없는 합병 | 180,000원 |
| (3) 주식의 병합·분할·소각 | 150,000원 |
| (4) 회사(법인)의 해산·청산종결·계속에 관한 등기,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, 본점(주사무소)의 이전, 지점(분사무소)의 설치·이전, 상호·목적의 변경 | 120,000원 |
| (5) 무능력자 등기, 법정대리인 등기 | 70,000원 |
| (6) 임원(이사·감사·사원·지배인·청산인 등)의 선임·변경 | 100,000원 |
| (7)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| 60,000원 |
| (8) 그 밖의 등기 | 60,000원 |

Ⅲ.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

| 후견등기 유형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(1) 후견등기 신청 | 250,000원 |
| (2) 후견등기기록의 변경, 기타 등기 | 100,000원 |

Ⅳ. 동산·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

1. 담보권의 설정,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

| 채권액(채권최고액)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1천만원까지 | 190,000원 | | | |
| 1천만원초과 | 5천만원까지 | 190,000원 | + | 1천만원초과액의 | 10/10,000원 |
| 5천만원초과 | 1억원까지 | 23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9/10,000 |
| 1억원초과 | 3억원까지 | 275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8/10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435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7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575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6/10,000 |
| 10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875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20억원초과 | 200억원까지 | 1,375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200억원초과 | | 8,575,000원 | + | 20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2. 담보권의 추가설정등기

| 채권액(채권최고액)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| 1천만원까지 | 120,000원 | | | |
| 1천만원초과 | 5천만원까지 | 120,000원 | + | 1천만원초과액의 | 4/10,000원 |
| 5천만원초과 | 2억원까지 | 136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3/10,000원 |
| 2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181,000원 | + | 2억원초과액의 | 2/10,000원 |
| 10억원초과 | 100억원까지 | 341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원 |
| 100억원초과 | | 1,241,000원 | + | 100억원초과액의 | 1/20,000원 |

3. 그 밖의 등기

| 그 밖의 등기의 유형 | 기본보수 |
|---|----------|
| (1) 담보목적물의 변경, 담보권의 변경·경정·연장·말소 | 100,000원 |
| (2)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·경정등기, 그 밖의 등기(담보권설정자의 변경·경정) | 70,000원 |

V. 공탁 사건의 보수 (보증보험 포함)

| 공탁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| 5천만원까지 | 150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1억원까지 | 15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9/10,000 |
| 1억원초과 | 3억원까지 | 195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8/10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355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6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475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10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725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20억원초과 | 100억원까지 | 1,125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100억원초과 | | 4,325,000원 | + | 10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VI. 경매·공매 사건의 보수

1.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(권리분석,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,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, 정보제공 등을 포함)

| 감정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|
| | 5천만원까지 | 600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1억원까지 | 60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9/1,000 |
| 1억원초과 | 3억원까지 | 1,050,000원 | + | 1억원초과액의 | 8/1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2,650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7/1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4,050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6/1,000 |
| 10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7,050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4/1,000 |
| 20억원초과 | 100억원까지 | 11,050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2/1,000 |
| 100억원초과 | | 27,050,000원 | + | 100억원초과액의 | 1/1,000 |

2. 매수(입찰)신청의 대리(매수(입찰)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, 확인 등을 포함)

| 매수(입찰)신청의 대리 | | 기본보수 |
|--------------|--|--|
| | | 감정가액의 1%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.5%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. 단,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|

VII. 송무·비용·집행사건의 보수

1. 법원·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

(1) 소장(상소장), 항고장, 답변서, 준비서면, 증거신청서, 화해신청서, 고소·고발장, 항고·상소이유서, 보전처분·집행·비용사건의 신청서,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·변제계획안 작성·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·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,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·면책신청서, 지급명령, 조정 신청서

※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.

| 소송물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| 3천만원까지 | 560,000원 | | | |
| 3천만원초과 | 2억원까지 | 560,000원 | + | 3천만원초과액의 | 10/10,000 |
| 2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730,000원 | + | 2억원초과액의 | 9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1,000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10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1,200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3/10,000 |
| 20억원초과 | | 1,500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(2) 공시최고·소송비용확정신청서, 소년신청(보전신청 제외)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

※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.

| 소송물가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3천만원까지 | 260,000원 | | | |
| 3천만원초과 | 2억원까지 | 260,000원 | + | 3천만원초과액의 | 1/10,000 |
| 2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277,000원 | + | 2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427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| 10억원초과 | 20억원까지 | 627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2/10,000 |
| 20억원초과 | | 827,000원 | + | 20억원초과액의 | 1/10,000 |

2. 법원·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

|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(1건당) 기일변경·지정의 신청서, 판결확정·송달증명의 신청서, 집행문부여 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, 도면 등. | 기본보수 |
|---|---------|
| | 40,000원 |

VIII.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

| 채무금액 | | 기본보수(산정방법)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5천만원까지 | 1,030,000원 | | | |
| 5천만원초과 | 3억원까지 | 1,030,000원 | + | 5천만원초과액의 | 8/10,000 |
| 3억원초과 | 5억원까지 | 1,230,000원 | + | 3억원초과액의 | 7/10,000 |
| 5억원초과 | 10억원까지 | 1,370,000원 | + | 5억원초과액의 | 5/10,000 |
| | 10억원초과 | 1,620,000원 | + | 10억원초과액의 | 4/10,000 |

IX.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

| 대행 업무의 유형 | 적용 기준 | 대행료 |
|--|-------|---------|
| 1.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,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| 1건당 | 50,000원 |
| 2. 취득세·등록면허세의 신고·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| 1건당 | 50,000원 |
| 3.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| 1건당 | 40,000원 |
| 4.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(신고 포함)·동의·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| 종류마다 | 50,000원 |
| 5. 정관, 의사록,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| 종류마다 | 80,000원 |
| 6.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| 종류마다 | 50,000원 |
| 7.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| 1건당 | 40,000원 |
| 8. 법원·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| 1건당 | 40,000원 |
| 9. 송무·비용·집행·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| 1건당 | 40,000원 |
| 10. 법원·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| 1건당 | 50,000원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11. 확정일자 날인,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| 1건당 | 50,000원 |
| 12. 등기사항증명서 발급·열람, 등기부등초본·열람 대행 | 1건당 | 3,000원 |
| 13.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| 1건당 | 40,000원 |

X.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상담 | 기본보수 |
| (1) 개별적 상담·자문(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) | 건당 150,000원(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) |
| (2) 계속적 상담·자문(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) | 월액 600,000원 |
| 2. 실비변상의 비용 등 | 기본보수 |
| (1) 교통비 | 1등급 여객운임(택시, KTX, SRT 일반석)기준 실비 (단, 현지교통비는 80,000원까지) |
| (2) 숙박비 |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|
| (3) 일당 |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,000원, 4시간 초과 160,000원 |

※ 「법무사보수기준」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.